기후변화법제 자료 14-19-(11)

## 제 5 차 기후변화법제포럼

# 제 5 차 기후변화법제포럼 

2014. 8. 8. 



목 차

## 【제 $\mathbf{1}$ 세션】

（ ）배출권 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－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자 ：유종 민（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）

## 【제 2 세션】

（ ）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－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 발표자 ：정 윤 경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） 33

## 제 1 세션

$$
\begin{gathered}
\text { 배출권시장 안정화 정책의 } \\
\text { 분석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}
\end{gathered}
$$

발 표 자 : 유 종 민 (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)

# 배출권 시장 안정화 정책의 분석 

-중앙은행 모델을 중심으로-
2014. 08.08.

자본시장연구원
연 구 위 원 유 종 민
yucono@kcmi.re.kr

## Agenda

## 1 서론

2)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3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조절기구에 대한 고찰
4 한계 및 시사점

## 1. 서론

## 서론: 연구 배경

* 2012년 5월『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』 (이하 "배출권거래제법")이 제정됨
- 2012년 12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
$\rightarrow$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
$\%$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2020년의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$30 \%$ 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공약
- Bloomberg는 한국의 감축 목표는 매우 야심찬 수준이라고 평가함


## 서론: 연구 배경

## \% 유럽연합에서 겪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오랜 침체

- 수차례 관찰된 시장가격의 폭락
-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- 저탄소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유인 상실


## 유럽과 같은 심각한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막을 운영 시스템을

 구축할 필요 제기*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화폐로서의 성격 논의
- Brunner et al(2012), Button(2008), Garnaut(2011), Helm et al(2003)
- 국내에 배출권 시장에의 중앙은행 시스템 도입은 처음 소개
-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춘 정책수립 시사점을 제시


## 서론: 주요 분석 요약

##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

- Fixed price, 가격 상하한제, 일회적 배출권 총량 조정, 이월 차입 조절


## 정책 수단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

- 장단기 가격 지지 효과, 기업 경쟁력 및 재정에의 영향, 시장 개입의 신속성
- 여러 해외 연구에서 Carbon Central Banking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분석


## * 배출권 시장에의 통화정책의 적용

- 환경의 유사성: 동태적 불일치성 및 톱니바퀴 효과, 투자의 옵션가치
- 배출권의 재산적 가치, 기존 일반상품들과의 상이점
- 통화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상충되는 목표와 정책수단

적용 한계와 시사점

## 2. 배츨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* 온실가스 저감정책 비교

|  | 직접규제책 | 시장유인책 | 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 | 목표관리제 | 고정세율 | 배출권 거래제 |
| 장점 | 정책의 편의성과 효과성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예측 가능한 } \\ & \text { 규제 순응 비용 } \end{aligned}$ | 실현될 배출 총량에 대한 확실성 |
| 단점 | -자발적 감축노력유도 부족 <br> -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정확 한 규제 어려움 | -실현될 배출총량에 대한 불확실성 <br> - 적시 세율 조정의 어려움 | 지나친 가격변동성 |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항

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\%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: 현재 3기를 운응 중

- 1기(2005~2007), 2기(2008~2012), 3기(2013~2020)
- 참여국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체코, 독일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헝가리, 이탈리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라트비아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스웨덴, 슬로베니아, 영국 등
- 1기의 폭락: 공급과잉으로 인한 폭락
- 2기의 폭락: 재정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


## 호주: 2011년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

- 1기(2012~2015)는 시범운영기간
- 2기(2015~2018)는 자율적이나 가격의 상하한을 정부가 결정
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 *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도

- 자율적인 가격형성
- 배출권의 가격상한을 정해놓았음
<뉴질랜드의 배출권 가격 추이>


자료: Point Carbon

## 배촐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항

$\%$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

- 국가차원의 배출권 제도가 2009년 상원에서 최종 부결
- 지역단위의 배출권 제도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
- RGGI(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프로그램, 캘리포니아
<미국 RGGI 배출권 가격 추이>

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황

## $\%$ 캐나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참여하는 배출권 제도 WCI

- 2011년 출범하였음
- 캐나다의 퀘벡, 브리티시 콜롬비아,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이 참여
- 국가 간 배출권 제도의 결합이 실제로 정책에 적용된 첫 사례 <WCI의 배출권 가격 추이>



##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 및 현항

## 중국: 지역단위의 거래제 운영

- 베이징, 톈진, 상하이 등 도시단위 시범지구
- 광둥, 쓰촨 등 주단위의 배출권 제도
- 규모 면에서 타 국가를 압도
- 텐진 지역의 시장규모는 스위스 거래제를 능가
- 국가단위의 배출권제도 창설(2015년 목표)을 위해 ADB, WorldBank 등과 협력 중


## 일본: 도쿄도 지역의 운영

- 도쿄상품거래소 산하에 독립적 거래소를 설립
- 2005년부터 배출권 매매를 시행 중
- 2010~2019년까지 약 $6 \%$ 의 배출상한의 축소를 목표
" 게이단렌 중심의 조직적 반대에 직면 $\rightarrow$ 고정세율 체제 선호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## *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의 결함이 변동성을 증가시킴

- 공급 측면이 미리 결정됨: 도쿄의정서의 감축의무 달성 및 지구 온난화라는 정책목표 달성
- 고정된 배출권 공급 $\rightarrow$ 비탄력적 공급곡선 $\rightarrow$ 작은 수요 측면의 충격에도 큰 반응
-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제도(banking \& borrowing): 충격 흡수에는 역부족
<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(EU-ETS)의 가격 동향>
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## $\mathrm{SO}_{2}$ 배출권 시장: 정책리스크 \& 자연재해로 인한 변동성증가

- 2005년 미국 환경부의 주간청정대기규칙(CAIR)
-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가스관 운반시설 파괴
-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CAIR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
<미국 $\mathrm{SO}_{2}$ 배출권의 가격 동향>
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## * 배출권 거래제(Cap-and-Trade)의 개념적 정의

- 오염물질 배출의 전체적인 총량만을 통제하여 사인간에는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
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
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가격통제정책

## * 가격상한(price ceiling)

- 경기과열 또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급등은 규제대상기관의 비용부담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
- 시장가격이 정해놓은 상한에 도달하면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상한가격에 무제한 매입 가능
- 단점: 가격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무제한 구입이 가능해 배출총량 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될 가능성 존재(가격 규제만 가능, 양적 규제는 불가능)


## * 가격하한(price floor)

- 가격이 지나치게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무제한 매입해줌
- 장점: 피규제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권 구입에 대한 부담을 지게하는 효과 및 감축허용량을 출임으로써 감축목표달성이 용이
- 단점: 정부가 무제한으로 배출권을 흡수해야 함으로 재정부담이 발생


## 상하한 가격(price collar)

- 밴드설정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유동성 조절 정책

## *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(banking \& borrowing)

- 유럽연합, 미국의 캘리포니아, 호주 등의 대부분 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
- 이월은 허용되며 차입은 제한적으로 가능


## * 상쇄권 허용한도의 조절

- 정부로부터 발급되는 배출권 이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배출권리인 상 쇄권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량을 조절


## 일회성 배출권 총량 조절

- 시장교란 및 기존 참가자의 금전적 손실 가능성


## 배출권 조절의 중앙은행식 모델

- 대부분의 경우 배출권 예비분(reserve)을 운영
-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개발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 가능


## 탄소중앙은행의 개입 방식



## 탄소중앙은행의 개입 방식



##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국가 간 비교

## <주요국가의 배출권 시장 세부 운영>

| 국가 | 채택 방안 |
| :---: | :---: |
| 유럽 | - 무제한 이월 허용 \& 1년치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<br> - 100 유로/톤 의 벌금 |
| 호주 | - 무제한 이월 허용 \& 후년도 발행량의 $10 \%$ 차입 허용 <br> - 가격상한(20 호주달러/톤)과 하한(15 호주달러/톤) |
| ```미구ᄀ (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``` | - 무제한 이월 허용 <br>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상쇄권의 공급 확대 |
| 미국과 캐나다 <br> (캘리포니아 + 퀘백) | - 무제한 이월 허용 <br>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<br> - 가격하한에서부터 경매를 통한 유동성 공급 |
| 미국 <br> Waxman Markey 법안 | - 무제한 이월 허용 <br> - 징벌적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년도 발행량 차입 허용 <br> - 가격상한 이상의 시장가격 형성 시 상쇄권의 공급 확대 <br> - 가격하한에서부터 경매를 통한 유동성 공급 |

## 배촐권 시장의 안정화 방안: 제도 간 비교

|  |  | 정의 | 사혜적용 | 장첨 | 단점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직접적 } \\ & \text { 가격통제 } \end{aligned}$ | 상한가격 | 배출권을 특정가격부턴 정부로부터 무제한 공급 |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미국의 SO2시장 | 의도하지 않은 환경규제 강 화를 방지 | 배출 총량 과다 가능성 |
|  | 하한가격 | 배출권을 특정가격으로 무제한으 로 매입 | 2~3기 EU-ETS | 배출권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유지 | 재정적 부담 |
|  | 상한가격 <br> (Price collar) |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제한 |  | 상한과 하한가격제의 장단점 | 을 모두 가지고 있음 |
| 유동성 <br> 조절을 <br> 통한 <br> 간접적 <br> 가격조정 | 이월 및 차입 | 이윌: 이번 기에 배출권을 사용하 지 않고 다음 기 사용을 위해 저장 차입: 이번 기에 사용할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음기의 배출권을 미리 빌려 사용 | 1기 EU-ETS | 가격 움직임 예상에 따라 배출권 사용 조절 가능 | 이월 혹은 자입된 배출권 의 쏠림현상 |
|  | Offsets 허용한도 조정 |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배출 허용 권리권 | 모든 배출권 시장에서 적 용 중 | 추가적인 상쇄권 구입을 통해 서 배출권 배출저감비용 절약 | 국내 인정비율의 불확실성 |
|  | 일시적 총량조정 | 배출권 시장에서의 일시적 할당 유보 및 주가 | 3기 EU-ETS | 유동성 조절을 통해 간접적 으로 가격지표가 원하는 방 향으로 관리 가능 | 항구적 방식에 비해, 효율 적 시장에서는 효과 크지 않음 |
|  | 항구적 총량조정 | 배출권 시장에서의 일회적이지만 항구적인 할당취소 및 추가 |  |  | 정책 신뢰성 저하 |
|  | Central banking | 매매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시장가 격에 대한 스무딩오퍼레이션 (scooting operation) 수행 |  |  | 과도한 시장개입 가능성 |

## 국내 배출권 거래제 세부 운영 계획

## \% 시장 안정화 조치

- 배출권거래제법 23 조, 시행령 30 조
- 조건: 6 개월 연속으로 직전 2 개 연도 평균가에 3 배 이상, 거래 급증, 공익 목적
* 가격통제정책
- 일시적 최고 혹은 최저 매매가격 설정
- 과징금 상한: 톤당 10 만원 한도 내 직전 3 개월 평균 가격의 3 배


## 유동성 조절정책

- 업체별 보유 최대 혹은 최소 한도의 설정
- 상쇄권 제출 한도의 확대 혹은 축소
-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 할당



## 3. 배질권 시장의 유동성 조절기구에

 대한 고찰
## 가격안정화시스템: 평가기준 간 비교

## \% 단기적 배출권 가격의 지지

- 단기간 가격 급등락에 따른 평가손익으로 상품투자자 입장에서 자산으로써의 가치 절하

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가격수준에 대한 신호

- 청정기술 혹은 오염저감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과 관련

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

-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 및 비용측면으로서의 배출권 구매
* 국제협약과의 조화
- 국제협약의 경우, 국가별로 절감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

국제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성

- 가격 안정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측면


## 가격안정화시스템: 평가기준 간 비교

## \%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저항성

- 공표된 가격변동폭(band)이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


## \% 재정에의 영향

- 가격변동 허용폭 유지에 따른 재정에의 악영향
- 양적 개입일 경우 재정에의 긍정적 영향
* 시장 개입의 신속성
-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론 수렴과정


## * 규제의 충격

-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결정되어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가격 결정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


## 가격안정화시스템: 시스템 간 비교

| 평가기준 | 배출세 | 가격 <br> 상한제 | 가격 <br> 하한제 | 상하한제 | 일시적 <br> 총량 조정 | 항구적 <br> 총량 조정 | 중앙 <br> 은행 제도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배출권 가격의 지지 | + | + | + | + | $@$ | + | + |
|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| 0 | + | - | @ | - | - | + |
| 국제협약과의 조화 | - | @ | @ | - | 0 | + | + |
| 국제 연계성 | - | - | - | - | 0 | 0 | $@$ |
| 투기적 수요에의 저항성 | 0 | - | - | - | 0 | 0 | + |
| 재정에의 영향 | + | + | - | $@$ | 0 | 0 | + |
| 시장 개입의 신속성 | - | - | - | - | + | + | + |
| 규제의 중격 | - | - | - | - | - | - | + |

주: (-) 부정적 영향, (0) 중립적 영향, (+) 긍정적 영향, (@) 블확실한 영향

## 탄소중앙은행 모델 관련 논의

| 국가 | 명칭 | 출처 | 역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호주 | Carbon Bank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Mckibbin 등 } \\ & (2002) \end{aligned}$ | - 호주 중앙은행을 벤치마크 <br> - 배출권 중앙은행이 배출권 인쇄 및 판매 <br> - 정치적 영향을 제거한 독립 기관 |
|  | Carbon Bank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Garnaut 등 } \\ & (2011) \end{aligned}$ | - 필요한 수준의 재량권 부여 <br> - 5 년 기간동안의 재량권 행사 범위 부여 <br> - 환경 당국에 대한 조언 및 협조 <br> - 거래시장의 감독 및 조사 |
|  | Climate Change Authority (유동성조절 기관) <br> Clean Energy Regulator (감독기관) | The Austrialian Gov't climate change plan (2011) | - 장기적 배출 총량 달성을 위한 단기간의 배출 한도 검토 및 조정 <br> -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 행위 |
| 영국 | Carbon Bank | Taylor 등 (2011) | - 배출권 할당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제거 <br> - 유럽정책위원회에 대한 조언 및 보좌 |
| 미국 | Carbon Market <br> Efficiency Board | Lieberman- <br> Warner Bill (2008) | -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벤치마크 <br> - 시장 정보에 대한 조사 <br> - 시장 이상징후 시 광범위한 개입조치 가능 <br> - 가격 통제 |

자료: Sustainable prosperity (2011)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

## 통화정책이 처한 환경과의 유사점

- 정부와 민간과의 동태적 불일치성(dynamic inconsistency)
-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 수립 당시 가장 적합한 정책 수준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더이상 최선의 정책이 아닐 수 있음
- 높은 배출권 가격을 예상케 만들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를 유도한 다음 실제로는 배출권 공급을 늘려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식
- 투자의 옵션가치
- 투자는 비가역적(irreversible) 속성
- 통화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매몰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투자 결정이라는 옵션가치를 포기할 이유가 없게 된다. 즉 투자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유보
-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상황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허용되어 잠재적 불확실성 내포


## 배출권의 법적 성격

-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서의 재산권 v.s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권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

## \% 기존의 실물상품시장(Commodity markets)과의 비교

- 유사점
- "사용" 및 "소비" 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"퇴장"
- 주식 및 채권과는 달리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아 순전히 수급에 따른 가치평가
- 다른점
- 에너지/곡물/금속 등 일반상품들의 공급은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, 배출권은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 발권력을 보유
- 저장비용(Storage Costs)의 여부
- 환경당국은 통화정책과 유사하게 배출권으로부터 주조차익(seigniorage)
* 정책목표 및 수단측면
- ....계속......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: 정책목표 및 수단촉면

## \% 상충되는 목표(배출량 통제와 경기부양)

<통화당국의 필립스 커브>

<배출권 유동성 조절기구의 필립스 커브>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: 정책목표 및 수단촉면

## \% 정책수단측면(유동성 조절)

<통화당국의 정책수단 및 중간지표>

<배출권 유동성 조절기구의 정책수단 및 중간지표>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: 정책목표 및 수단촉면

## * 정책수단측면(유동성 조절)

<통화당국의 정책수행 방식>

이자율

<배출권 유동성 조절기구의 정책수행 방식>


배출권종량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

## 정치적 독립의 필요성

-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금본위제가 폐기된 대신,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하여 화폐가치를 보존
- 산업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원하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낮은 수준의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 희망


## 최종 대부자(lender of last resort)의 기능

- 금융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민간의 신용경색에 대한 해결사 역할
- 법적 권한을 가진 유동성 조절기구의 존재 자체만으로 배출권 시장의 과열과 산업계의 부담 방지
* 감독권: 발행, 매개, 거래, 사용단계 대상
- 중앙은행 혹은 별도의 감독기구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시장 감시의 역할
- 유럽 배출권 시장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시장조작 및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 존재 (중복 사용, 상쇄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한 자금도피 등)


##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

## \% 중앙은행 시스템과의 상이점

- 정책 시점의 차이
- 채권시장이 선진화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(단기-중기-장기 채권시장) 를 통해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완화 및 긴축의 효과
-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인한 영향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소요
- 유동성 조절 수단
- 통화(확대)정책의 (1) 통화안정채권 환매, (2) 환매조건부채권 매입, (3) 정부로의 납세 및 대출 혹은 국채 매입, (4) 원화를 지급하는 통화스왑 등 채권과 화폐의 교환
- 유동성 확대도 유동성 조절기구가 배출권 공급하는 배출권과 화폐의 교환


## 탄소중앙은행의 지배구조모델

## <유동성 조절기구의 지배구조>



자료: Ross Garnaut (2011)에서 변형

## 4. 한계 및 시사점

## 배출권 시장에서 중앙모델의 한계

* 양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cap-and-trade의 장점만 훼손할 가능성
* 너무 잦은 빈도의 시장개입이나 매매는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됨
* 규칙이 아닌 자의적인 시장운영 혹은 재량적 개입의 가능성
* 정치적 독립성 결여
* 환경문제로 인한 후생손실을 객관적 지표화하기 어려움
* 재정적 부담: 가격하락으로 인한 배출권 매입 시
* 실제 제도화되어 실행된 사례가 없음


## 시사점

## 배출권 시장의 태생적 한계에 주목하였음

- 배출권의 공급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는 통화정책과의 비교
-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방안에 대해 연구
- 유동성 조절기구를 통한 시장의 미세조정
\% 배출권의 유통원리가 화폐와 매우 유사
$\rightarrow$ 중앙은행식 모델을 따를 것을 제시
- 유동성 조절기구의 신뢰성이 담보
- 정치적 중립성 및 의사결정 위원회 구성이 필요



## 감사합니다.

## 제 2 세션

$$
\begin{gathered}
\text {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} \\
\text { 전망-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 }
\end{gathered}
$$

발 표자 : 정 윤 경 (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)

## 기후변화협상 동향 및 전망 - 신기후체제 협상 중심으로

## 2014년 08월 0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윤경 부연구위원

## 현 기후체제의 구조

- 선-개도국 간 감축의무 차별화 명확
- 현 교토체제 하에서는 선진국(부속서 I 국가)만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부담
- 단, 미국은 교토의정서 불참. 일본, 뉴질랜드, 러시아, 캐나다 2 차 공 약기간('13~'20년) 불참
- 반면, 개도국(비부속서 I 국가)은 자발적인 '국가 적정 감축행 동'(NAMA)을 통해 참여

|  | '08-'12 | '13-'20 | Post-2020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유럽, 호주 <br> 일본, 러시아, NZ <br> 캐나다 <br> 미국 <br> 개도국 | 감축의무 | 감축의무 없음 |  |
| 모든 ㄷㅏㅏ사국에 |  |  |  |
| 동일한 적용 |  |  |  |
| 출저: 이호무(에경연) 작성 | 교토의정서 거부 - 감축의무 없음 | (의무 여부 미정) |  |

## 신기후체제(Post-2020) 협상 배경

-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 변화체제 협상 개시에 합의
- 결정문을 통해 2015년 파리 총회에서 "협약 하의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의정서, 또 다른 법적 문서,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된 결과물"(2015 합의)이 채택될 수 있도록 더반플랫폼 작업 반(ADP)에 작업 위임.
- 원칙적으로 선-개도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기후체제
- 2015년 합의 구성요소에는 감축, 적응, 재정, 기술개발 및 이전, 행동과 지원의 투 명성, 능력형성 포함
- 더불어 2020년 이전의 감축수준 상향 및 새로운 감축 방안 발굴을 통한 감축의욕 제고 포함
$=>$ ADP 협상의 결과물은 2020년 이후 국제기후변화 체제를 규 정하는 핵심적인 문서가 될 전망(이호무(2013))


## ADP 협상 논의경과

| 협상회의 | 주요 논의 내용(감축 분야 중심) |
| :--- | :--- |
| '12.5월 - 본 | ADP 의제 채택, 공동의장 선출 |
| '12.8~9월 - 방콕 | Equity, 국가별 상황 등 현재 논의의 근간 표출 |
| '12.12월 - 도하 | ADP 협상 일정, workstream 별 주요 논의 요소 채택 |
| '13.4~5월 - 본 | 상향식 위주의 목표 설정, 감축목표의 종류/특성 |
| '13.6월 - 본 | 목표 설정 프로세스와 의욕 향상 방안, 향후 협상 방식 |
| '13.12월-바르샤바 | 의도하는 국가 결정 공약(INDC)' 115 변 중 제기랄 (준비된 당사 <br> COP20까지 사전 정보 확인 요청 |
| '14.3월 - 본 | 컨택그룹(contact group) 설치에 합의 |
| '14.6월 - 본 | INDC 범위, 감축공약 제출시기, 형태, 수준 및 제출 이후 검 <br> 토절차 논의, 의장단 사전 정보에 대한 결정문 초안 제시 |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1)

- 의도하는 국가 결정 공약(INDC*): 각 당사국이 자국의 (감축)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(bottom-up approach)함을 의미
- 여러 국가가 INDC는 2015 합의의 기반임을 확인
* INDC: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
- INDC의 범위에 대해 선-개도국간 첨예한 의견 대립
- 선진국은 감축에만 적용 또는 감축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입장
- 개도국은 감축 뿐 아니라 6가지 요소에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
- 도서국가는 감축, 최빈국 및 아프리카는 적응, 중국 등은 MOI 강조
- INDC 범위에 대한 유연한 접근 필요: 감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 어야 하나 적응 등 여타 요소들도 각국의 결정에 따라 반영 가능.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2)

- INDC 감축 관련 제출시기, 공약형태, 목표연도, 제출 이후 검토절차 등에 대한 논의 심화
- (제출시기) 미국, 유럽 등 일부 선진국 및 도서국가만 조기제출 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' 15 년 $1 / 4$ 분기 제출 의지 표명
- 특히, 선진국은 주요 경제국들의 조기 제출 강조
- 반면, 개도국은 공약 제출시기에 대한 언급보다 지원 필요성 강조
-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아직 공약설정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
-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주요국이 제출한 공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바, 이를 고려하여 제출일정 결정
- (목표연도) 공통된 공약목표연도 설정에 대한 논의 활발
- 대부분 선진국 2030년 제시, 반면 미국은 2025년을 공식입장으로 주장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3)

- (공약형태) 선-개도국의 공약형태 차별화 문제
- 대다수 국가가 개도국의 감축 공약형태에 있어 절대량 감축, BAU , 원단 위 목표, 기타 저탄소정책 및 조치 등 다양한 옵션 허용
- 다만,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축공약만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
- 개도국은 부속서-비부속서 국가 간의 감축 공약형태의 차별화 강조
* 부속서 I 국가는 국가단위의 절대량 감축목표 제출해야 하고 기존

감축목표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함(no backsliding)

- 감축공약 설정 시 산업경쟁력, 국제적 위상, 감축 잠재량 등 국내 여건 및 협상 논의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한 감축형태 및 수준 결정 중요
* 현재 감축형태 중 BAU 방식이 가장 유연하나 일부 선진국은 투명성에 대한 의문 제기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4)

* BAU 방식 채택 시 감축목표 설명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검증 필수
- 감축공약 형태는 각국이 국가 여건(national circumstances) 및 능력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
-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출시기, 목표연도, 공약형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임.
- 감축공약 제출 후 협의기간/검토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는 형성되었으나, 절차의 목적, 성격, 개시시점, 조정가능성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
- (목적/성격) 일부 선진국은 글로벌 목표달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감축의 욕의 적절성 및 개별 공약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반면, 다수 국가들은 상호 공약의 이해증진 및 투명성 제고 강조
- (조정/재설정 가능성) 각국 감축의욕의 비교-평가 절차로 이해하는 경우 조정 가능성 지지. 현실적으로 이미 제출된 감축공약 수준의 변경은 어 려움.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5)

- (기간) 제출 후부터 2015년 합의 전까지, 2015년 합의 후 개시, 일정요건 (critical mass, thresholds 등) 충족시 개시 등 다양한 입장 존재
- (기타) 감축 이외의 다른 요소에의 적용문제, 검토절차의 주체 등
- 감축공약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체적 감축의욕 수준 파악 위한 절차
- 당사국들의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고 각국이 의욕적인 목표를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
- 금년 리마 총회에서 각국의 INDC에 수반되어야 할 사전 정 보목록에 대한 결정 필요
- 당사국의 공약준비 촉진, 공약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 해 사전적 정보 목록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함.
- 선진국은 감축공약의 정량화를 위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출의 필요성 강조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6)

- 단, 대체적으로 사전 정보 제출의무는 감축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 장
- 감축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정보목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부속서 체제/국가 분류에 따른 차별화는 반대
- 시장 메커니즘, 토지이용 부분의 회계에 대한 정보제출의 중요성 강조
- 개도국은 부속서 체제에 입각한 선-개도국간 정보 목록의 차별화 주장
- 사전 정보목록 요소별로 다를 수 있으나 감축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님.
- 선진국의 지원에 대한 사전 정보 제출 주장
- 사전 정보목록을 감축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최 소한의 공통정보와 여타 추가정보로 구분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7)

- 공약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최소한 감축유형, 공약기간, 기준년도, 감축대상 온실가스 및 부문, 예상감축량, 주요가정, 방법론 등에 대 한 정보 제공 필요
- 추가정보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공약형태 및 국가여건에 따라 제출
- 정보 내용 및 작성작업이 개도국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함.
-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협력 필요
- 당사국 간의 INDC 감축공약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-개도국 공감대 형성
- 부속서 체제 유지, 새로운 국가 분류법(선진국, 개도국, 중간소 득 국가, 취약국 등), 공약 형태/감축수준/법적성격에 따른 차별 화 등 여러 차별화 방안 존재


## ADP 협상 주요내용: INDC (8)

- 단, 선진국은 부속서 체제에 기반한 이분법적 국가 분류체계 (유지)반대
- 미국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자국의 여건을 반영하는 자체적 차별화(selfdifferentiation) 주장
- 반면, 유럽은 전체적인 공약수준의 비적절성(inadequacy) 우려, 이에 대 해 유보적 입장
- 협약의 '공동의 차별화된 책임(CBDR)' 원칙을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동태적(dynamic) 맥락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
-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속서 체제 유 지 주장
- 협약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에 기인하여 주도적 역할
- 개도국의 감축공약은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조건으로 함
- 공약의 형태/수준/법적성격에 대해서 차별화


## ADP 협상 일정

| 연도 | 분기 | 주요 일정 |  |
| :--- | :--- | :--- | :---: |
| 2014 | $1 / 4$ | 협상문 주요요소 구체화 시작(3월 회의) |  |
|  | 장관급회의(6월 회의) |  |  |

출처: 이호무(에경연) 작성

- 올해 9 월 23 일에 개최되는 반기문 총장 주최 기후정상회의가 기 후변화협상에 중요한 모멘텀 제공 가능


## 향후 협상 전망

- 선진국-개도국이 다양한 의제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어려울 전망
- 개도국: CBDR 원칙에 부합하는 선-개도국 차별화 유지
- 선진국: 차별화 제한을 통해 주요 배출국의 국가 단위 감축목표 제출 유도
-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단일 기후체제 하에서의 CBDR 원칙에 대한 개도 국-선진국 간의 합의점 모색 필요
- 공동의장단에 대한 신뢰형성 여부가 협상의 진전을 좌우할 것 으로 전망
- 의장단에 대한 신뢰회복은 협정문안 작성이 의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(당사국 주도에 비해 협상진도의 가속화 예상)
- 현재 선진국은 공동의장단을 지지하는 한편, 개도국 사이에서는 의장단에 대한 불신 팽배
- 10 월 회의 대비 의장단이 게재한 ADP 의제전반 개요문서와 정보 관련 결 정문 초안이 선-개도국 의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



## 참고자료

- 우리나라 관련 주요 지표


